



요약(핵심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2.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보고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1쪽)

| | |
|-----------|---|
| 1. 명 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주식투자신탁W호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45271, 종류A: 52744, 종류: 52790) |
|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
| 4. 자산운용회사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II. 투자정보 (☞ 본문 1~5쪽)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1. 투자목적 |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우량주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블루칩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블루칩의 성장성과 배당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함. 다만,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비교지수: (KOSPI*75%)+(3개월CD금리*25%) |
| 2. 주요 투자전략 | -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 - 필요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수익 획득을 위하여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
| 3. 주요 투자위험 |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3등급 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
| 5. 기준가격 |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idasasset.com)에서 확인 가능 |

6. 운용전문인력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 41 | | 31 | 20,904 | KAIST MBA - 8 3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도 | 최근 1년 (07.5.1 ~ 08.4.30) | 최근 2년 (06.5.1~08.4.30) | 최근3년 (05.5.1~08.4.30) | 설정일 이후 (04.7.23 ~ 08.4.30) |
|------|-----------------------------|---------------------------|--------------------------|-------------------------------|
| 투자신탁 | 21.55% | 14.04% | 22.21% | 23.70% |
| 비교지수 | 16.30% | 12.03% | 21.90% | 22.27% |

※ 비교지수: (KOSPI*75%)+(3개월CD금리*25%)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 본문 5~10쪽)

1. 수수료 및 보수

| 구 분 | | 지급비율(연간, %) | | |
|------------------------|--------------------------------|-------------|---------------------------------------|---------|
| 종 류 | | 종류 A | 종류 I | |
| 수익증권 판매 기준 | | 제한없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자 또는 간접투자기구에 한함 |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¹⁾ | - | - | |
| | 환매수수료(90일미만 환매시) ¹⁾ | 이익금의 70% | 이익금의 70% |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보수 | 운용회사보수 | 연 0.65% | 연 0.65% |
| | | 판매회사보수 | 연 1.60% | - |
| | | 기타보수 | 연 0.07% | 연 0.07% |
| | | 보수합계 | 연 2.32% | 연 0.72% |
| | 기타비용 | 연 0.033% | 연 0.013% | |
| 총보수·비용비율 ²⁾ | | 연 2.353% | 연 0.7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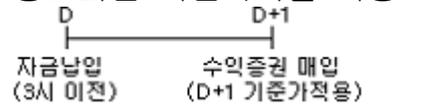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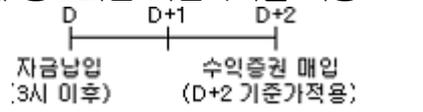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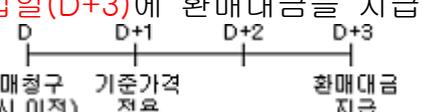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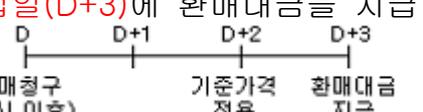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상장주식과 관련선물 양도 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4.30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는 3년간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부여됩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2. 과세 :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상장주식과 관련선물 양도 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4.30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는 3년간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부여됩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후 |
|-----|--|--|
|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시가 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성장(기업의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 상승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필요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 수익 획득을 위하여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미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 **국내주식의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주식시장은 그 등락을 거듭하며 이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주식 시장의 변화와 별도로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2) **파생상품 관련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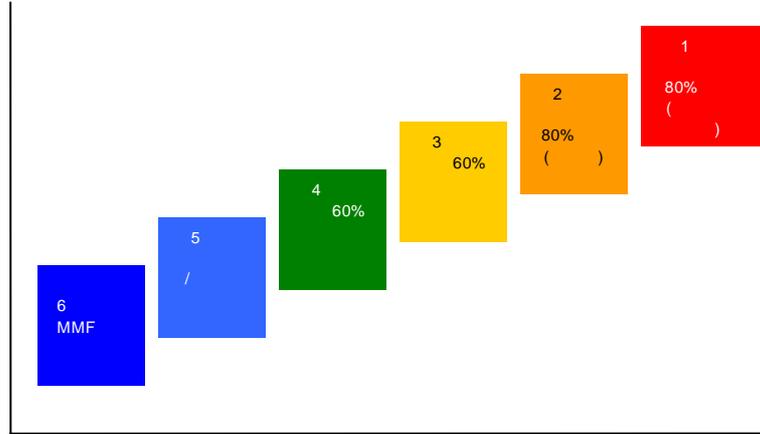
(3)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생상품 투자위험, 신용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중도환매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기초자산관련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연기 위험, 기타위험의 내용으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나, 변동성이 일반적인 주식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는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므로 6등급의 위험(p. 8 예시 표 참조)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예시)

| | | |
|-----|----------|---|
| 1등급 | 극히 높은 위험 |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며 주식 시장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운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
| 2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며 주식 시장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
| 3등급 | 높은 위험 |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나, 고배당주 등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
| 4등급 | 중간 위험 | 주식에 60%이하 투자하는 경우 |
| 5등급 | 낮은 위험 |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등) |

[예시] 당사에서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한 위험등급

| 위험등급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
|------|--------------------------|
| 1 등급 | 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투자회사 |
| 2 등급 | 마이다스코스닥스타인덱스주식형투자회사 |
| 3 등급 |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형투자회사 |
| 4 등급 | 마이다스블루칩배당환합투자신탁 1 호 |
| 5 등급 | - |
| 6 등급 | -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산정주기 | 매일 산정 |
| 공시시기 |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전 |
| 공시방법 및 장소 | -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http://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6. 운용전문인력

| 이름 | 연령 | 직책 | 경력 | 자산 | 학력 |
|-----|-----|-----|-----|----------|------------------------------------|
| 허필석 | 41세 | 본부장 | 31개 | 20,904억원 | KAIST 테크노 MBA 마이다스에셋-주식운용8년 3개월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총괄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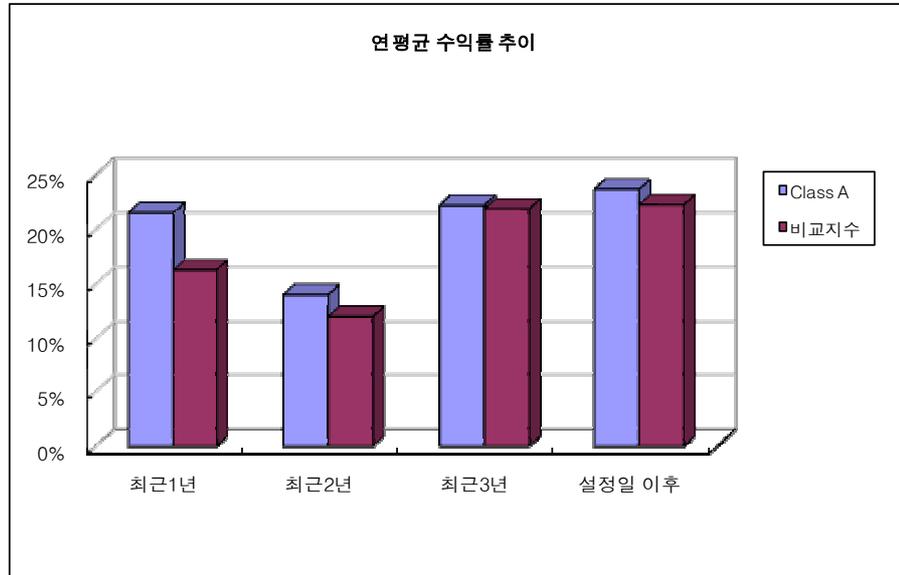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도 | 최근 1년 (07.5.1 ~ 08.4.30) | 최근 2년 (06.5.1~08.4.30) | 최근3년 (05.5.1~08.4.30) | 설정일 이후 (04.7.23 ~ 08.4.30) |
|------|-----------------------------|---------------------------|--------------------------|-------------------------------|
| 투자신탁 | 21.55% | 14.04% | 22.21% | 23.70% |
| 비교지수 | 16.30% | 12.03% | 21.90% | 22.27% |

※ 비교지수: (KOSPI*75%)+(3개월CD금리*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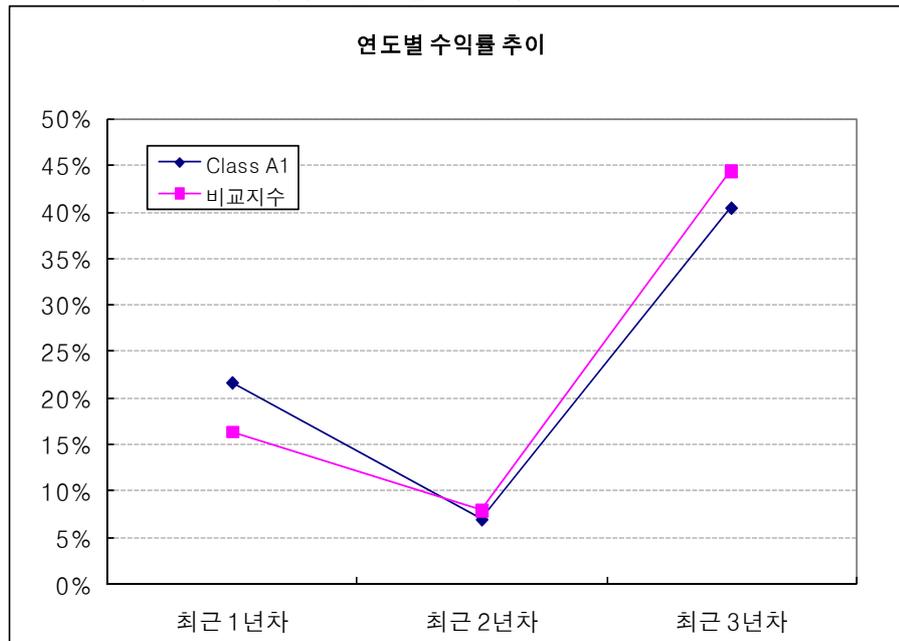
※ 상기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나. 연도별 수익률추이

| 기간 | 최근1년차 (07.5.1~ 08.4.30) | 최근 2년차 (06.5.1~ 07.4.30) | 최근3년차 (05.5.1~ 06.4.30) |
|------|----------------------------|-----------------------------|----------------------------|
| 투자신탁 | 21.55% | 7.03% | 40.39% |
| 비교지수 | 16.40% | 7.96% | 44.39% |

※비교지수:(KOSPI*75%)+(3개월CD금리*25%)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 지급비율 (연간, %) | 지급시기 |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비용 | 선취 판매수수료 | - | -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
| | 환매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A: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Class I: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환매시 |
| | 기타 | - | - |
| | 합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A: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Class I: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환매시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 지급비율 (연간, %) | 지급시기 |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자산운용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65% | 3개월 단위 |
| | 판매회사 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A: 순자산총액의 연 1.60% ■ Class I: 없음 |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2% | |
| | 수탁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5% | |
| | 기타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A: 연 0.033 %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등) ■ Class I: 연 0.013 %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등) | 사유발생시 지출 |
| | 총 보수·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2.32%+ 기타비용(연 0.033%) ■ C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0.72%+ 기타비용(연 0.01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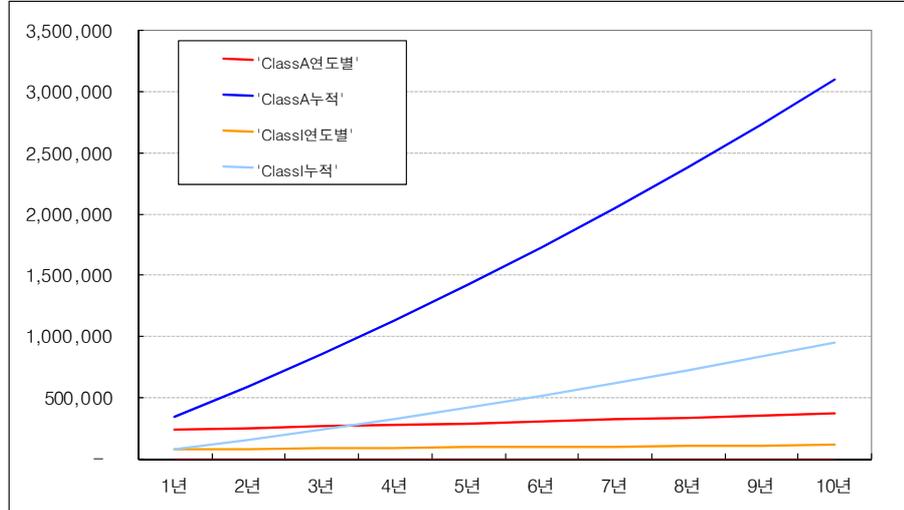
주1)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만원)

| 투자기간 | 1년기 | 3년기 | 5년기 | 10년기 |
|---------|-------|-------|--------|--------|
| Class A | 33.78 | 85.18 | 141.85 | 310.25 |
| Class I | 7.51 | 23.69 | 41.52 | 94.50 |

* 종류A1 수익증권의 1년차는 선취 판매수수료 포함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제외)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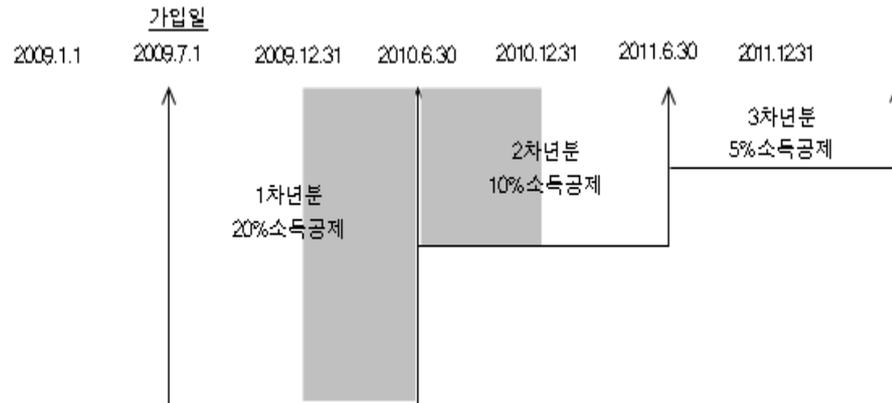
(3)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 우대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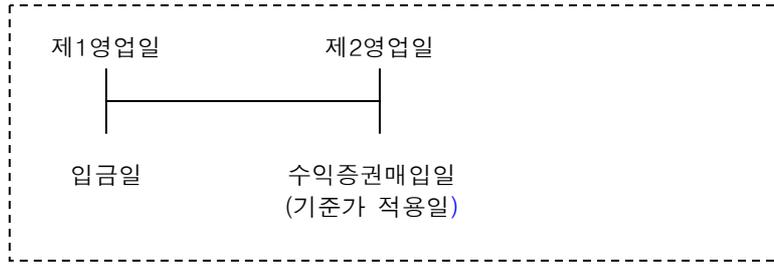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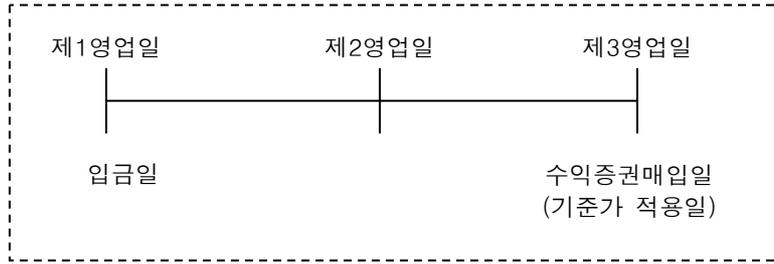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②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일>

| | 1 | 2 | 3 | 4 |
|----------|---|---|---|---|
| 15 (3) | | 가 | | |
| 15 (3) | | | 가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환매수수료
- Class A 수익증권: 환매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함
 - Class I 수익증권: 환매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함.

- (4)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 [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경과 후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가능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회사는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수익률이 뛰어난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상승기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미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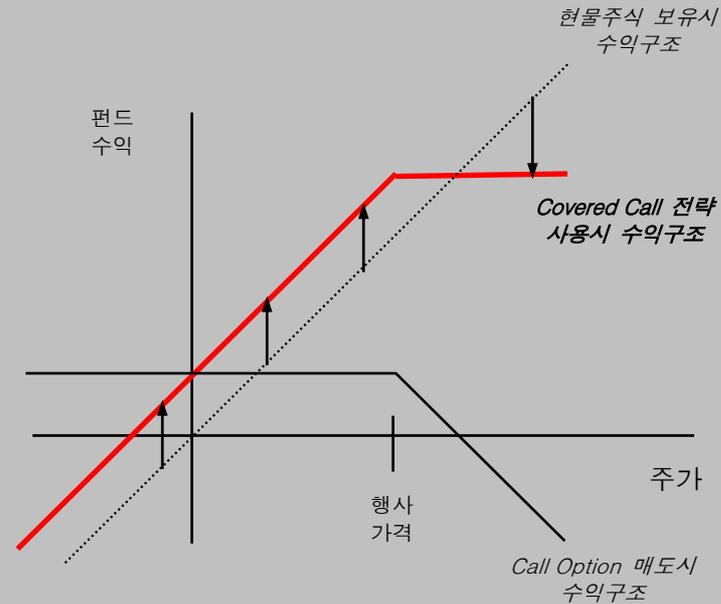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수익 획득을 위하여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자산운용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커버드콜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전략을 말하며, 동전략 실행시 주가추이에 따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주식 보유 부분에서 큰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수익률 상승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콜옵션 프리미엄 수입으로 현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별로, 신탁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의 중요도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주식 가격 변동 위험

-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율,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2) 금리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위험

1)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 기타 위험

1) 순자산가치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

보유자산의 현저한 거래부진이나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거래정지, 부도, 대량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환매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3.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 주요 내용 |
|-------------------------------------|-------------------------------------|---|
| 주식 | 60% 이상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에 의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
| 채권 | 20% 이하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
| 어음 | 20% 이하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
| 자산유동화증권 | 2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금리스왑거래 |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
| 수익증권등 | 5% 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 |
| 투자증권의 대여 |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기준 신탁재산의 15% 이하 (투자목적: 헤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u>주식선물</u> ,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국채선물옵션(이하“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외환선물, 외환옵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보유채권의 50%이하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u>투자증권의 차입</u> | <u>20%이하</u> | <u>투자증권의 차입</u> |
| 수탁회사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단기대출(30일)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 상품) | ○ |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
| 투자비용 적용 예외 |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주식 내지 금리스왑거래 투자비용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3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년 3 월·6 월·9 월 12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 월간 적용한다.
-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 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6)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 1) 내지 7)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은 “4.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계획”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투자한도, 가. 2)분문 및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1)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2) 비상장주식 또는 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3)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 4)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5) 비상장채권(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6)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 그 유가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의 최종시가
 - 7)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8)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9)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10)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가. 상기에서 규정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법인 이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 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구분 | 중개회사 선정기준 |
|----|--|
| 주식 |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애널리스트 3. 평가항목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탐장주선, 세미나 주최 등 당사 운용수익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 |
| 채권 | 1. 평가방법 매 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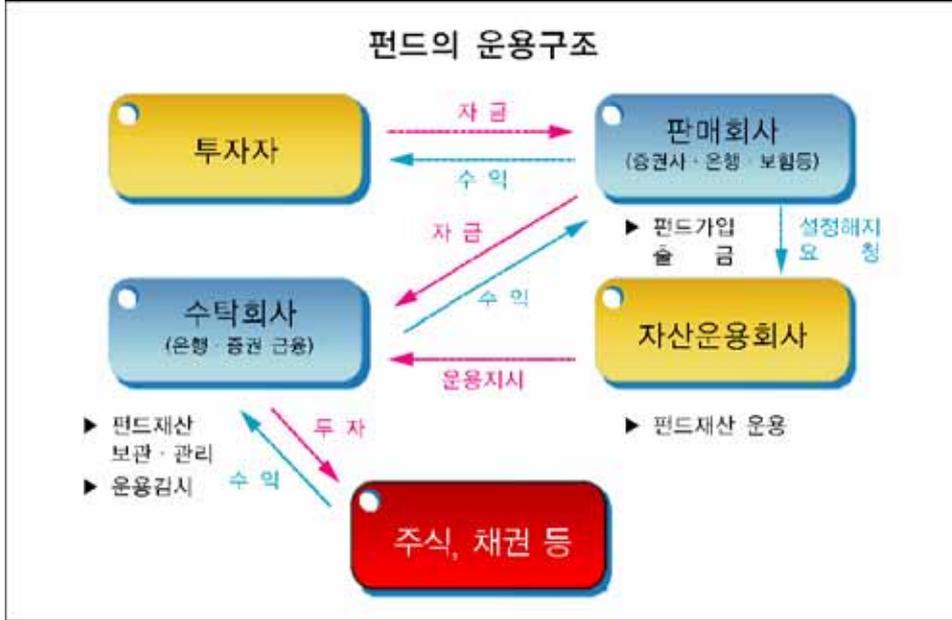
2.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구분 | 중개회사 선정기준 |
|----|---|
| 주식 |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3. 평가항목 시황관련 정보제공 등 운용수익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과 매매체결의 신속/정확성 |
| 채권 |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이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회계기간이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분배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02) 3787-3500 |
| 회사연혁 |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억원) |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 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 위탁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2 사업 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 대차대조표 | | |
|-------------|--------------------|---------------------|
| 항 목 | 제9기 (2007.3.31) | 제10기 (2008.3.31) |
| 유동자산 | 212 | 273 |
| 고정자산 | 126 | 176 |
| 자산총계 | 338 | 449 |
| 유동부채 | 42 | 40 |
| 고정부채 | 5 | 4 |
| 부채총계 | 47 | 44 |
| 자 본 금 | 100 | 100 |
| 이익잉여금 | 193 | 304 |
| 자본조정 | -2 | 1 |
| 자본총계 | 291 | 405 |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제9기 (2006.4.1~2007.3.31) | 제10기 (2007.4.1~2008.3.31) |
| 영업수익 | 239 | 280 |
| 영업비용 | 95 | 105 |
| 영업이익 | 144 | 175 |
| 영업외수익 | - | - |
| 영업외비용 | - | - |
| 경상이익 | 144 | 173 |
| 특별이익 | - | - |
| 특별손실 | - | - |
| 세전순이익 | 144 | 48 |
| 당기순이익 | 103 | 125 |

4. 운용자산규모
(2007.12.31 기준,
순자산기준)

| 종류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 자산 | 총계 |
|-----|--------|-------|-------|-------|-------|-----|----------|--------|
| 수탁고 | 32,947 | 6,228 | 5,642 | 7,403 | 5,061 | 39 | 59 | 57,379 |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비고 |
|-----|-----|-----|-----------------|---------------------|---|-----|
| | | |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 다른 다른 운용자 산규모 | | |
| 허필석 | 41세 | 본부장 | 31개 | 20,904억원 | - KAIST 테크노 MBA - 주식운용 (마이다스에셋 8년3개월) | 팀운용 |

※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총괄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은 팀제에 의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가나다 순)

| 회사명 | 주소 | 연락처 | 회사연혁 |
|-----------|-----------------------|--------------|---------------|
|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02-3771-9000 | 1949.11.22 설립 |
|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2004-9000 | 1956.2.25 설립 |
| (주)우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 02-2002-3000 | 1899.1.30 설립 |
| 우리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 02-768-7000 | 1969.1.16 설립 |
|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02-368-6000 | 1954.5.12 설립 |
| 하나대투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02-3771-7986 | 1977.2.14 설립 |
| (주)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02-1588-1111 | 1959.12.1 설립 |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02-3276-5000 | 1974.9.16 설립 |
| (주)한국외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02-729-0114 | 1967.1.30 설립 |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우리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02-2002-3000 |
| 회사연혁 | 1899년 설립 |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의 의무

- ①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회사의 책임

- ①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SC제일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2014-2000 |
| 회사연혁 | 1999. 11. 03 설립 |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 소 | 연락처 | 연혁 |
|---------|--------------------------------|---------------|---------------------------------|
| 한국채권평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 3215-1400 |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
| KIS채권평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 02) 399-3350 | 설립일 :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 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6) 파생상품투자신탁의 위험에 관한 지표

(www.midasasset.com)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가

, 2

1

(http://www.midasasset.com),
(http://www.amak.or.kr)

/ / /

(, / /

) / , /

가

(2) 의결권 행사

1

가

5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개방형(간접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설정 |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성과보수 |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 |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
| 주식형(간접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증권투자신탁 |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추가형(간접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p>환매수수료</p> | <p>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p> |
| <p>환매조건부채권</p> | <p>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p> |
| <p>환헤지</p> | <p>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p> |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